



: 2020-09-09

## 대전고등법원

### 제 1 행정부

### 판 결

사 건 2019누13341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금환  
수처분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1. 주식회사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선

피고, 피항소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호진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8구합107298 판결

변 론 종 결 2020. 6. 18.

판 결 선 고 2020. 7. 16.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8. 28.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77,120,675원의 정부출연금 환수 및 3년의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 원고 B에 대하여 한 3년의 중



: 2020-09-09

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 1) 적용 법리

가)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7. 3. 21. 법률 제14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2조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등을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및 출연금환수의 사유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 제재사유 및 처분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1항 및 [별표 2]는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 등이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제1호 가목)에는 3년 동안 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및 지급한 출연금의 전액 환수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시행령 등으로부터 참여제한 및 출연금환수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위임받은 이 사건 운영요령 제30조 제1항 [별표 3]은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제1호 가목)에는 위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참여제한 3년 및 출연금 전액 환수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연구개발과정은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에도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제1호 마목)에는 참여제한을 면제하고 출연금도 환수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에 관한 법령의 규정 체계 및 내용, 불성실 연구수행 등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취지와 아울러 이 사건 운영요령이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도 그 연구개발과정 수행의 성실 여부에 따라 제재에 차이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시행령 조항의 제재사유 중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위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추진의 구체적 경과, 사업의 기초가 된 협약의 위반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



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개발과정이 여러 진행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연구개발의 진행 과정과 각 진행 단계 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판결 등 참조).

## 2)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3,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이 2015. 7. 24.경 피고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을 제3호증)에 기재된 이 사건 과제에 대한 개발기술 개요 및 기술개발 목표는 아래와 같다.

### 1-1. 개발기술 개요

다양한 방향 캡슐이 포함된 감물<sup>1)</sup> 바인더를 활용한 천연 사염<sup>2)</sup> 기술 개발 및 이를 활용한 침구, 의류 제품 제작

천연 섬유 염색의 사염 단계에서 방향 캡슐을 감물 바인더로 코팅하는 방법으로 화학 염료 없이 천연 염료만으로 섬유 염색을 가능하게 한다.

제안 기술은 천연 섬유에 천연 향료인 피톤치드, 자일리톨, 시트라네라 등의 캡슐을 입히면서 감물로 염색과 동시에 바인딩하는 것으로 소재, 향, 염료가 모두 천연 재료가 사용되는 100% 천연 소재의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중략>

### 3-1. 기술개발 목표

- 감물 바인더를 이용하여 방향 캡슐을 코팅하는 기술 개발
  - 천연 염료인 감과 다양한 방향을 첨가한 원사 개발
  - 대표 방향으로 피톤치드 캡슐을 활용할 것이며, 직물 가공 후에도 향이 지속
  - 이후 다양한 효능을 지닌 아로마 향을 활용하여 직물 개발
  - 방향 캡슐을 감물 바인더를 활용하여 섬유에 고착
- 개발 기술을 통해 생산된 직물을 사용한 제품 개발
  - 주관 기업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적용
  - 해당 기술을 활용한 의류 및 침구 제품 개발
- 목표달성도 평가지표



※ 선정평가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정량화·수치화 하여야 하며 미흡할 경우 감점 요인이 됨  
 ※ 기술개발종료 후, 최종 개발목표 달성 여부는 측정시료의 평균값을 계획된 목표치와 비교하여 평가

| 주요 성능지표 <sup>1)</sup>   | 단 위              | 최종 개발목표 <sup>2)</sup> | 세계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업) | 기준치 <sup>3)</sup> (%) | 객관적 측정항목    |                    |
|---|------------------|-----------------------|-------------------|-----------------------|-------------|--------------------|
|   |                  |                       |                   |                       | 시료 수 (n≥5개) | 시험규격 <sup>4)</sup> |
| 1.포름알데히드  | %                | 20mg/kg               | -                 | 20                    | 10          | KS K ISO 14184     |
| 2. 항균성  | %                | 99% 이상                | 99%               | 20                    | 10          | KS K 0890          |
| 3. 마찰 견뢰도   | 급                | 4급 이상                 | 3-4               | 20                    | 10          | KS K ISO 105 C06   |
| 4. 세탁 견뢰도   | 급                | 4급 이상                 | 3-4               | 20                    | 10          |                    |
| 5. 인체독성   | -                | 무독성                   | 무독성               | 20                    | 10          | KS K ISO 3071      |
| 6. 탈취(소취)율  | %                | 90%이상                 | 99%               | 20                    | 10          | 가스검지관법             |
| 7. 원리외선 흡이온   | W/m <sup>2</sup> | 800이상                 | -                 | 20                    | 10          | 국내규격없음 (흡이온측정기)    |
| <input type="checkbox"/> 시료수 5개 미만 (n<5개)시 사유<br>○  |                  |                       |                   |                       |             |                    |
| <input type="checkbox"/> 측정결과에 증명방법 제시<br>○ 견뢰도 성능지표 해당 공인 시험인증기관(FITC 시험연구원)의 시험성적서 제출<br>○ 자체 시험 항목은 주관기업에서 측정하여 데이터 제출 |                  |                       |                   |                       |             |                    |

나) 원고들이 2016. 8. 18.경 피고에게 제출한 최종보고서(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1)에 기재된 이 사건 과제 수행결과의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항목                      | 계획                              |     | 실적                               | 달성도(%) |
|-------------------------|---------------------------------|-----|----------------------------------|--------|
| 개발목표                    | 피톤치드 사염 기술 개발<br>감추출물 바인딩 기술 개발 |     | 피톤치드 사염 기술 개발함<br>감추출물 바인딩 기술 개발 | 80     |
| 정량적<br>목표항목<br>및<br>달성도 | 평가항목                            | 목표치 | 평가항목 실적                          | 달성도(%) |
|                         | 1. 감물 바인더 조사                    | 100 | 감물 바인더 조사함                       | 80     |
|                         | 2. 피톤치드 캡슐 조사                   | 100 | 피톤치드 캡슐 조사함                      | 80     |
|                         | 3. 아로마 캡슐 조사                    | 100 | 아로마 캡슐 조사함                       | 50     |
|                         | 4. 감물 바인더 제작                    | 100 | 감물 바인더 제작함                       | 80     |

- 1) 덜 익은 감에서 나는 짧은 즙을 지칭한다.
- 2) 사염(絲染)이란 원료 상태의 실에 염색하는 것을 지칭한다.



|      |  |     |                  |     |
|------|--|-----|------------------|-----|
|      | 5. 캡슐+감물 바인더 직물 제작   | 100 | 캡슐+감물 바인더 직물 제작함 | 50  |
|      | 6. 시제품 직물 제작   | 100 | 시제품 직물 제작함       | 100 |
|      | 7. 품질 테스트  | 100 | 품질 테스트 완료        | 100 |
|      | 8. 상품 시제품 생산   | 100 | 상품 시제품 생산하고 판매   | 100 |
| 기타성과 | ○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건수(특허등록 1건, 특허출원 1건)<br>○ 기타: 인증, 포상, 개발제품 매출: 186백만 원, 기술이전 등  |     |                  |     |
| 기대효과 | 기술개발 후 방직 업체를 통한 주문 제작을 했음. 그 원단을 가공하여 제품화 했으며, 개발 기술로 생산한 원단을 방직업체에서 다른 고객에게도 판매하고자 하면 런닝 개런티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개발기술의 활용도가 극대화 되었음 |     |                  |     |

다) 피고의 최종평가위원회가 2017. 2. 6.경 이 사건 과제 수행을 심사하여 원고들에게 보낸 '최종평가(1차) 평가결과 안내'(을 제4호증의 2, 3)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
| <p>&lt;전략&gt;<br/> 사. 평가결과: 실패<br/> 아. 평가점수: 50점<br/> 자. 종합평가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술개발 과정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물 바인더를 이용한 방향 캡슐을 코팅하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직물의 제품 등에 대한 연구개발 과정의 제시가 없어 과정 적정성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li> </ul> </li> <li>2. 기술개발 결과물의 성능/시험평가 적정성 및 객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능지표 항목에 대하여 모두 공인기관에서 시험평가가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첨부한 자료의 해상도가 낮아 일부 확인이 가능하며, 나머지 부분은 확인이 어려움.</li> </ul> </li> <li>3. 기술개발 결과물의 최종목표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부한 자료의 해상도가 낮아 확인이 어려우며, 확인이 가능한(포름알데히드, 마찰 견뢰도, 탈취율) 일부 항목에 대하여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나, 세탁 견뢰도, 원적외선 음이온은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항목(항균성, 마찰 견뢰도, 인체독성)은 확인이 불가능함.</li> </ul> </li> <li>4. 기술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현장실태조사를 통하여 186백만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방향 캡슐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매출의 내용과 개</li> </ul> </li> </ol> |
|--|



발제품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음.

라) 피고의 이의신청평가위원회가 2017. 4. 11.경 이 사건 과제 수행을 심사하여 원고들에게 보낸 '최종평가 이의신청평가위원회(2차) 결과통보'(갑 제9호증, 을 제5호증)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략>

라. 평가점수: 0

마. 평가결과: 실패

바. 평가의견:

1. 기술개발 과정 적정성

- 기존 지적된 감물 바인더를 이용한 방향 캡슐을 코팅하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직물의 제품 등에 대한 연구개발 과정의 제시가 없어 과정 적정성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에 대한 기술 내용은 일부 소명코자 하였으나 명확한 해소로 보기는 어려움(보고서 내용이 매우 미흡).

2. 기술개발 결과물의 성능/시험평가 적정성 및 객관성

- 기존 지적된 성능지표 항목에 대하여 모두 공인기관에서 시험평가가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첨부한 자료의 해상도가 낮아 확인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소명되었음.

3. 기술개발 결과물의 최종목표 달성도

- 기존 지적된 첨부 자료의 해상도가 낮아 확인이 어려우며, 확인이 가능한(포름알데히드, 마찰 견뢰도, 탈취율) 일부 항목에 대하여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나, 세탁 견뢰도, 원적외선 음이온은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항목(항균성, 마찰 견뢰도, 인체독성)은 확인이 불가능함에 대한 내용은 일부 소명되었음.

- 기재출되지 않았던 달성도의 항목인 항균성, 마찰 견뢰도, 인체독성의 결과자료는 제출되었으나, 최종보고서의 개발항목별 보고서의 내용과 일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객관성을 확인할 수 없음.

4. 기술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가능성

- 기존 지적된 1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현장실태조사를 통하여 186백만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방향 캡슐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매출의 내용과 개발제품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음에 대한 내용은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일부 소명되었으나(매출 116백만원 정도), 기존의 평가 결과를 반복할 만한 사안은 아님.

마) 피고의 성실성검증위원회가 2017. 12. 12.경 이 사건 과제 수행을 심사하여 원





고들에게 보낸 '성실성검증위원회 평가결과 통보'(갑 제11호증, 을 제7호증)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략>

라. 평가결과: 실패

마. 평가의견:

1. 방향 캡슐이 포함된 감물 바인더를 활용한 섬유 개발을 위한 감물바인더 업체 조사, 피톤치드 업체 조사, 감물바인더 직물 제작 시제품 직물 제작 등과 관련된 개발 내용 및 일정이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 최종보고서 및 성실성입증보고서에는 이와 관련된 연구 진행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연구의 충실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2. 연구 노트를 통해 전체적인 연구의 개념이나 제작 방안에 대한 스케치는 있으나 실제적인 기술로 실현된 자료나 제작 결과, 수정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3. 최종 평가 및 이의 신청 평가 시 제기되었던 공인시험 성적서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 세탁견뢰도 원적외선 음이온 등에 대해서는 신규로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였으며, G대학교와 K공대에서 자문을 실시하여 자체 보완활동이 인정됨.
4. 개발 기술 관련하여 특허를 출원하고 2017년 등록된 실적을 1건 보유하고 있으며, L과의 업무협약, 매출 실적 등을 감안할 때 자체 노력을 통한 사업화 성과 등이 인정됨.

3) 구체적 판단

가) 원고들의 사업계획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과제 의 핵심은 감물 바인더를 활용하여 방향 캡슐을 코팅하는 기술(이하 '이 사건 기술'이라 한다)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종보고서 등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과제의 기술개발기간(2015. 6. 22. ~ 2016. 6. 21.) 내에 이 사건 기술의 개발에 성공하였는지, 또 원고들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기술개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피고의 최종평가위원회, 이의신청평가위원회, 성실성검증위원회가 이 사건 과제 수행을 심사한 뒤 '실패' 평가를 내린 것이 어느 정도 수긍되기는 한다.





나) 그렇지만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과제 수행을 단지 실패하였다는 것을 넘어서,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이 곧바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 갑 제8, 15, 16, 20 내지 26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제의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들이 이 사건 과제의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평가하기는 더욱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과제의 기술개발기간 중인 H일자 원고 B을 발명자로 하여 'I'라는 명칭의 발명특허를 출원하였고, 그 특허는 J일자 등록(M)되었다. 위 특허출원서에는 위 발명에 관하여 '원사에 천연 재료를 단계별로 바인딩, 건조하여 염색 견뢰도를 높이고, 소취성을 가지는 인체 친화적인 천연 재료를 이용한 사업방법과 그로 제조되는 사업원사에 관한 것이다'는 설명이 있고, 구체적인 발명의 내용에 관하여 '천연 염색제의 천연 재료는 전체 천연 염료 100% 중 감 분말 40% 내지 60%와 밤, 호두, 홍화씨, 녹차, 포도 껍질, 구아바 잎의 열수추출액 중 어느 하나 이상을 40% 내지 60% 혼합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천연 방향제는 피톤치드, 자일리톨, 시트로넬라 중 어느 하나 이상을 마이크로 캡슐화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는 설명이 있으며, 특허출원서에 기재된 전체적인 발명의 내용 및 효과가 원고들이 이 사건 과제에 관하여 제출한 사업



계획서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 실제로 위 사업계획서에는 '감물 바인더를 이용하여 방향 캡슐을 코팅하는 기술을 특허출원하여 권리 획득을 통해 개발 기술 보호 및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기술유출 방지대책도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위 발명특허는 이 사건 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과제의 수행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 발명특허를 출원·등록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과제의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정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원고 회사의 매출액은 2015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과제의 연구결과 또는 위 발명특허가 이러한 매출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② 피고의 최종평가위원회는 이 사건 과제를 '실패'로 평가하기는 하였으나, 종합 평점은 성공으로 평가되는 점수인 60점에 근접한 50점으로 매겼고, 위 위원회의 종합 의견은 이 사건 과제의 일부 항목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보면서도 나머지 항목의 목표 달성을 자료 부족 또는 자료 해상도 문제 등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위 위원회 평가위원 6명이 작성한 개별 평가표에 의하면, 기술개발 과정의 적정성 등 4가지 평가지표를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의 5단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였는데, 위 4가지 평가지표 중 하나라도 불량 단계에 해당한다고 본 평가위원은 1명에 불과하고, 그 평가위원 1명조차도 나머지 평가지표 3가지 중 2가지는 보통, 1가지는 미흡 단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과제의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③ 피고의 성실성검증위원회 역시 이 사건 과제를 '실패'로 평가하기는 하였으나, 그 종합의견에는 원고들이 최종평가 및 이의신청평가 이후 신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



였고, 대학교에 자문을 실시하는 자체 보완활동을 하였으며, 특허출원과 매출실적을 감안할 때 사업화 성과가 인정된다는 긍정적인 요소들도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위원회 평가위원 6명이 작성한 개별 평가표에 의하면, 기술개발 일정의 충실한 진행 등 4가지 평가지표를 우수, 보통, 불량 3단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였는데, 위 4가지 평가지표 중 하나라도 불량 단계에 해당한다고 본 평가위원은 3명에 그쳤고, 그 3명의 평가위원들조차도 나머지 평가지표 3가지는 우수 내지 보통 단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운영요령은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면 참여제한 3년 및 출연금 전액 환수의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반면,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더라도 '연구개발과정은 성실하게 수행'하였다면 아무런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연구개발과정 수행의 성실성에 따라 제재조치 여부에 큰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운영요령을 적용함에 있어 연구개발 결과가 실패했다거나 그 수행과정에 '성실성'을 인정하기에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불성실' 수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제재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제재조치가 정당화될 만큼의 불성실성이 충분히 입증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위 평가결과만에 근거해서 원고들이 이 사건 과제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④ 오히려 위 최종평가위원회, 이의신청평가위원회, 성실성검증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들에다가,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새롭게 작성하여 제출한 최종보고서(갑 제15호증), 연구노트(갑 제16호증) 등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F 등에 이 사건 기술을 적용한 직물의 시험을 의뢰하였으며, 이 사건 기술을 적용한 시제품을 제작하는 등의 기본적인 연구과정 및 사후 보완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뒤늦게 제출된 위 연구노트의 내용을 기존에 제출된 자료(특히 성실성입증보고서)들과 비교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과제 기술개발기간 내에 연구노트를 성실하게 작성하였는지 의문이 들기는 하나, 설령 원고들이 위 연구노트를 성실하게 작성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를 판단할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피고의 성실성검증위원회도 이와 같이 보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연구과정 및 사후 보완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연구노트 문제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과제의 연구개발과정을 전체적으로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     |    |     |
|-----|----|-----|
| 재판장 | 판사 | 문광섭 |
|     | 판사 | 임현태 |
|     | 판사 | 성하경 |



[별지]

## 관계 법령

### ■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7. 3. 21. 법률 제14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1조(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학교·기관·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 제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④ 제1항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 평가절차, 같은 항 각 호의 참여 제한 사유별 참여 제한기간의 구체적 기준 및 제2항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출연금의 환수)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학교·기관·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연구원이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0조(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등)

② 법 제3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참여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2(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 등)**

- ① 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의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및 결과의 활용 가능성
  3. 그 밖에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출연금의 환수기준 및 절차 등)**

- ① 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는 사유와 환수금액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환수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출연금 환수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제20조 제2항 및 제21조 제1항 관련)**

| 참여제한 사유  | 제한<br>기간 | 출연금<br>환수범위 | 근거<br>법조문              |
|--|----------|-------------|------------------------|
|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 3년       | 전액          | 법 제31조<br>제 1 항<br>제1호 |
| 가.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             |                        |

▣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2015. 12. 22. 중소기업청고시 제2015-67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최종보고)**



- ①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각 사업별로 정한 서식에 의해 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파일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기술개발결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25조(최종평가)

-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최종평가에 대한 결과는 최종보고서, 연구노트,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공”, “성실수행”, “실패”, “보류”로 구분하며, 판단기준 아래 각호와 같다.
  1. 성공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성실수행 : 기술개발목표를 미달성하였으나 기술개발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실패 : 기술개발 목표를 미달성하고 기술개발 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사업비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시정조치 불이행의 경우
  4. 보류 : 성공, 성실수행 또는 실패 판정을 위한 근거 자료 부족으로 재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 제30조(제재 등)

-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 제38조(과제책임자)

- ③ 과제책임자는 기술개발사업의 진행사항 및 개발내용 등에 대해 연구노트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별표 3] 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근거조문 : 제17조, 제30조, 제31조, 제46조)





: 2020-09-09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 참여제한 사유                                 | 제한 기간 | 출연금 환수범위 |
|---|-------|----------|
| 가.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3년    | 전액       |
| 마. 연구개발과정은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에도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면제    | 환수하지 않음  |

끝.